

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

2017년 3월 14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국 무 위 원 홍 윤 식
행정자치부 관
장 (법무부 소관)

●법률 제14585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제2항제3호 중 “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”를 “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,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,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, 관세청,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권한대행
국 무 총 리 황 교 안 인

2017년 3월 14일

국 무 총 리 황 교 안
국 무 위 원 김 재 수
농림축산 관
식품부장관

●법률 제14586호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”를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(이하 “농업정책보험금융원”이라 한다)에”로 한다.